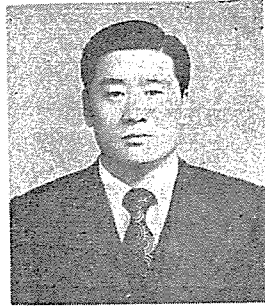


齒科用 金 合金에 對한 小考



대한치과의사협회

자재이사 허 연 옥

대한치과의사협회는 국산치재 및 약품이 생산될 경우 세계치과연맹(F. D. I.)의 규격을 따르도록 정관 제66조에 명시해 놓았다.

또한 치과의사에게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F. D. I. 규격에 의한 금 합금의 제조판매는 보사부에 허가를 받아서 실시하도록 중용한 바 있다. 그러나 최근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대부분의 Dental alloy는 본 F. D. I. 규격에 미달하는 불량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경향이라고 말하고 있다. 아직 본 협회에서 분석의뢰한 기관에서 그 결과가 나오지 않아 확실한 것은 말할수 없으나 항간에 들리는 여론에 의하면 금 합금이 될수 없는 저질의 무허가 제품의 Alloy를 판매하고 있다는 것이다.

본 협회로서는 F. D. I. 규격에 적합하고 가격이 저렴한 제품을 회원들에게 공급할 수 있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무엇이겠는가. 그러나 그 금 및 백금합량이 30% 정도인지, 50% 정도인지, 또는 75% 인지를 회원들의 육안으로서는 식별하기가 어렵다는데서 문제가 일어나는것 같다.

본 협회에서는 회원여러분의 요청에 따라 수차례 임하여 기제약품 특별위원회를 열고 지난 8월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6개상사의 금 합금 및 파라디움 합금을 수집하여 권위있는 정부기관에 분석을 의뢰해 놓은바 있다.

이러한 일련의 조치는 본 협회 정관 제66조에

따라 F. D. I. 규격의 금 및 백금 합량인 75% 이상의 것을 회원들에게 권장할 것이며 그 이하의 것은 금 합금이라는 명칭을 붙이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.

이것은 75% 이하의 제품을 회원들이 구입 사료했을 경우 환자의 구강내에서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생리학적 문제 또는 부식 및 독성물질 등의 부작용으로 인한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그 책임은 제조판매한 업자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임상에 사용한 회원이 환자에게서 받는 치과의사 불신임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지 않을수 없다.

그러면 우리 회원들은 이러한 일련의 현실에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. 이는 물론 각자가 거래상사의 제품을 잘 식별하여야 할 것이다. 또한 앞으로 보사부 허가를 얻어 판매하는 제조업자를 선택하는 것도 바람직 할 것이며 좀 과정이 복잡할는지 모르지만 순금을 구입하여 각자의 처방에 의해 카라트 메탈을 혼합하여 쓰면 상기와 같은 공포에서 해방될 것이며 업체를 정화시키는데도 한가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다.

참고로 세계치과연맹(F. D. I.) Casting Gold Alloy 규격의 금 및 백금 합량을 보면 I형(SOFT) 83%, II형(MEDIUM) 78%, III형(HARD) 78%, IV형(EXTRA HARD) 75%의 합량으로 나타나 있다.